

앞으로 금융위, 방통위 등 7개 위원회 결정문 10만 3천여 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

- 금융/통신사업자 대상 과태료 의결서, 토지수용 재결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 처분 당사자의 알 권리 증진 및 결정문 데이터 활용을 통한 리걸테크 산업 발전 기여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20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제공한다고 밝혔다.

- ※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된 위원회 결정문 약 2.5천 건을 우선 개방하고, 이후 연내 순차 개방
- * 결정문은 각 위원회가 법 위반 사건·민원 등에 관한 판단 근거를 담은 문서로서, 위원회 자체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행정문서임

예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23 - 21 - 055호)

안 건 명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 문

1. 피심인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하지 않는 행위를 중지하고 ~

...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200,000원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3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천여 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7개 위원회* 결정문까지 포함하면 총 10개 위원회의 결정문 11만여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문서(HTML)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방, 제공하게 된다.

- *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개인정보 비실명 처리정보(76건) 우선 개방 후 연내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PC/모바일 화면 >

이러한 법령정보의 개방체계 구축은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이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결정문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방송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 등과 관련된 결정문 등의 개방은 동일 또는 유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기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개방되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혁신 등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1~3 참조>

이와 관련하여,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법령정보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11만 건의 위원회 결정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게 되어 해당 정보에 관심있는 국민이나 단체가 더 편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웹/앱)는 510만 건 이상의 방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며, 하루 평균 약 80만 명의 국민들이 접속하여 약 1900만 회 이상의 법령정보를 검색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령정보제공 개방 플랫폼임

“앞으로도 법제처는 정부·공공기관과 협업하여 국민의 수요가 높은 다양한 법령정보를 개방, 제공함으로써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 결정문은 사용자별 이용 편의성을 위해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정보 공동 활용(open.law.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에서 서비스된다.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책임자	팀 장	이영진	(044-200-6782)
		담당자	사무관	이현승	(044-200-6788)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공공데이터국 공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하인호	(044-205-2461)
		담당자	사무관	송정호	(044-205-2469)



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34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기 관	OOOOOO(주)

2.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재산상 이익 수령에 관한 법령 위반에 대하여 OOOOOO(주)에 과태료 2천만원 부과 조치
-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수정하여 과태료 면제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OOOO(주)>

- (금감원 원안)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 아니 됨에도, OOOOOO(주)은 ETF 주식대여 업무와 관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음
- (수정의결 사유) 회사 내규 외 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기관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4호

안 건 명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주 문

1. 피심인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은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은 즉시 통보하지 않는 행위를 중지하고 ~

...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200,000원

...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및 위법성 판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내용을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심인이 이용약관에 대한 앱 이용자(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하 생략)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23 - 21 - 055호 >

안 건 명 : 0000대학교교수노동조합(학교법인 00학원) 조정사건 타결

1. 제목

- 0000대학교교수노동조합(학교법인 00학원) 조정사건 타결

2. 내용

- 0000대학교교수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관련 '23. 3. 1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는 1차 및 2차 조정회의 시 노사간 이견을 확인하고,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지도하였으며,
- 총 두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금일('23. 4. 10.) 조정회의에서는 노사 개별 면담, 노사 대표 독대를 반복하며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를 좁혀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여 '23. 4. 10.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안건번호 중앙2023교원조정9 >